

서울특별시 시립서울유스호스텔 민간위탁 동의안

의안 번호	2148
----------	------

제출년월일 : 2017년 10월 16일

제출자 : 서울특별시장

1. 제안이유

가. 시립서울유스호스텔은 청소년기본법 제18조 및 청소년활동진흥법 제11조에 의하여 설치·운영되고 있는 청소년시설로서, 우리 시가 사단법인 흥사단에 위탁하여 운영 중이나 2017년 말 위탁기간이 만료될 예정임에 따라,

나. 민간위탁 지속 필요성 및 재계약 타당성 등에 대한 심의를 실시한 결과, 1차(청소년정책과 적격자심의위원회), 2차(조직담당관 민간위탁운영평가위원회) 모두 적정으로 결정되었으며,

다. 여행청소년의 숙식편의와 활동을 지원하는 유스호스텔은 쾌적한 숙식환경 제공, 학교와의 네트워크 구축·협력 및 양질의 청소년 활동 프로그램 개발·운영 등의 역할을 수행하는 시설로,

현 수탁법인이 청소년활동의 전문성과 역사성, 축적된 경험을 활용하여 안정적·효율적으로 시설을 운영하였기에 민간위탁 재계약을 추진하고자,

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4조의3 및 부칙에 의거 서울특별시의회 동의를 받고자 함

2. 주요내용

가. 위탁사무명 : 시립서울유스호스텔 관리·운영

나. 민간위탁 추진근거 및 추진 필요성

○ 민간위탁 추진근거

- 청소년기본법 제18조(청소년시설의 설치·운영)
- 청소년활동진흥법 제16조(수련시설 운영의 위탁)
- 서울특별시 청소년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10조(권한의 위임 또는 위탁)
-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4조(민간위탁 사무의 기준) 제1항 및 같은 조례 제6조(민간위탁 사무내용)제1호

○ 민간위탁 추진 필요성

- 유스호스텔은 청소년활동진흥법상 여행청소년의 숙식편의와 활동을 지원하는 청소년수련시설로서,
청소년에 대한 높은 이해와 지식을 바탕으로 청소년 요구에의 적절한 대응과 다양한 프로그램 개발·운영을 통해 청소년에게 질 높은 서비스를 제공해야 하며,
이와 함께 이용료 수입을 통한 운영이라는 면에서 수익성을 동시에 추구해야 하므로 능률성 또한 현저히 요구됨
- 이에 청소년기본법은 지방자치단체가 민간의 전문성과 효율성을 활용할 수 있도록 청소년단체에 민간위탁을 할 수 있는 근거규정을 마련하고 있음
- 따라서 시설을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고, 다양한 청소년의 눈높이에 맞는 프로그램을 개발·운영할 수 있으며, 청소년 관련 전문적 지식과 사업경험이 풍부한 현재 위탁법인(청소년단체)에 위탁하여 운영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됨

다. 위탁사무 내용

- 국내외 청소년을 위한 숙박시설 관리·운영
- 국내외 청소년을 위한 교류 및 홍보
- 국내외 여행청소년의 활동지원
- 그 밖에 유스호스텔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

라. 위탁시설 개요

- 소재지 : 서울시 중구 퇴계로 26가길 6(예장동)
- 개관일자 : 2006. 2. 23.
- 시설규모 : 연면적 6,483m²(지상 7층, 지하 1층)
- 지원시설 : 객실 50개, 강당 1개, 회의실 4개, 식당 1개
- 이용대상 : 청소년 및 시민
- 위치도



마. 민간위탁기간

- 2년 (2018.1.1 ~ 2019.12.31)

바. 수탁자 선정방식

- 재계약

사. 소요예산 및 산출근거

- 소요예산 : 3,314백만원('17년)

- 산출근거

- 인건비 933백만원, 물건비 1,232백만원, 경상이전 177백만원, 자본지출 312백만원, 사업비 76백만원, 사업외지출 529, 예비비 55백만원

아. 민간위탁운영평가위원회 심의결과

- 2017년 제6차 민간위탁운영평가위원회 : 재계약타당성 등 적정

3. 참고사항

가. 관계법령

- 청소년기본법 제18조(청소년시설의 설치·운영)

-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청소년시설을 설치·운영하여야 한다.
- ③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라 설치한 청소년시설을 청소년단체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.

- 청소년활동진흥법 제16조(수련시설 운영의 위탁)

- 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, 제11조제3항에 따라 허가를 받은 수련시설 설치·운영자는 수련시설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청소년단체에 그 운영을 위탁할 수 있다.

- 서울특별시 청소년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10조(권한의 위임 또는 위탁)

- ① 시장은 별표 1의 청소년시설에 대한 운영을 자치구청장에게 위임하거나 청소년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. 이 경우 청소년시설의 운영 및 재정여건을 고려하여 예산의 범위 안에서

운영비 등을 지원할 수 있다.

- ② 제1항에 따른 위탁기간은 3년 이내로 하되, 한 번만 갱신할 수 있다. 이 경우 갱신기간은 2년 이내로 한다.

○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4조(민간위탁 사무의 기준)

- ① 시장은 법령이나 조례에 정한 시장의 소관사무 중 조사·검사·검정·관리업무 등 시민의 권리·의무와 직접 관계되지 아니하는 다음의 사무를 민간위탁 할 수 있다.

○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6조(민간위탁 사무내용)
: 제4조에 따라 민간에 위탁할 수 있는 사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.

1. 노인·장애인·여성·청소년·노숙인 등 복지시설의 운영에 관한 사무

※ 작성자 : 청소년정책과 청소년시설팀 김진영 (☎2133-4121)